

공적 부조 업데이트: 2020년 2월 5일

발신: 형평성 및 다문화 서비스 사무소(The Office of Equity and Multicultural Services)

수신: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전 직원

추가 질문: Antonio Torres, antonio.torres@state.or.us

책임 면제: 본 문서에는 법적 조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 혜택 수령이 체류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어떤 영향을 줄지와 관련하여 우려가 되는 분은 이민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배경:

2019년 8월 12일, 미 국토 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에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시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2020년 1월 27일, 미국 대법원은 새로운 법의 시행을 막았던 세 가지 연방법 금지령 중 마지막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이 이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주 전체에 금지령으로 규정을 차단한 일리노이 주입니다.

2020년 1월 30일,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은 2020년 1월 30일자로 연방 법원에서 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한 일리노이 주를 제외하고, 공적 부조 규정안(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최종 규정("Final Rule")을 2020년 2월 24일에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란 무엇입니까?

“공적 부조” 또는 “공적 부조 심사”는 이민국 관리가 개인에게 다음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 미국 입국
- 합법적 영주권자(LPR) 신분 취득(예: 그린카드)

공적 부조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민국 관리는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인의 모든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공공 혜택 이용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개인이 공적 부조 대상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조:

- (1)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final-rul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담당 관리는 신청자의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취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는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공적 부조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입국 신청자
- 영주권 취득 신청자
- 180일 이상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고 미국에 재입국하려는 영주권 소지자

공적 부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은 누구입니까?

- 미국 시민:
 - 미국에서 출생한 자
 - 귀화 시민
- 영주권 소지자(180일 이상 연속으로 미국을 떠나 있는 개인 제외).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 소지자
 - 영주권을 갱신하는 자
- 현역 군인과 그 가족
- 인도주의적 이유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예:
 - 난민
 - 망명인(망명 신청자 포함)
 - 임시 보호 신분(TPS)인 자
 - 여성폭력 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자가청원자(Self-Petitioner)
 - T 또는 U 비자 신청자 또는 소지자
 - 청소년 특별 이민 신분(SIJS)인 자
 - 일부 가석방된 자
 - 기타 외국인 부류에 속하는 자

오리건 주의 어떤 공공 혜택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적 부조로 간주됩니까?

21세 이상 비임신 성인을 위한 비응급 오리건 건강 보험(예: Medicaid) 보장
Medicaid가 지원하는 장기 요양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또는 푸드 스탬프
연방, 주정부 또는 지역 정부의 현금 보조 프로그램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보조금(SSI) ▪ 빈곤 가정 대상 임시 지원(TANF)
섹션 8 임대 지원(예: 주거 선택 바우처)
프로젝트 기반 섹션 8 주택 및 정부 보조 주택

참조:

(1)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final-rul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오리건 주의 어떤 공공 혜택 프로그램이 신규 규정에 따라 공적 부담으로 간주되지 않습니까?

21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오리건 건강 보험 보장(예: Medicaid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
출산 후 60일을 포함하여 임산부를 위한 오리건 건강 보험 보장(예: Medicaid, 내/외국인 규정 면제 응급 의료(CAWEM) 플러스 등)
오리건 MothersCare(OMC) 프로그램
모든 연령대 개인을 위한 응급 오리건 건강 보험 보장(예: CAWEM)
오리건주의 Cover All Kids 프로그램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및 헤드스타트/오리건 공립 유아 과정(PreKindergarten)
고용 관련 데이케어 보육 상환
취학 연령 아동을 위한 학교 기반 건강 서비스
무상 및 할인가격 학교 급식 프로그램(예외: SNAP를 통한 본 프로그램 의뢰가 있는 경우 새로운 규정에서 고려)
여성, 유아 및 어린이(WIC) 보충 영양 프로그램
오리건주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Health Insurance Marketplace)를 통해 제공되는 민간의료보험금 보조
오리건 푸드뱅크 프로그램 및 서비스
미국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 OAA) 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정부 지원 프로그램(예: 오리건 자립 프로젝트(Oregon Project Independence, OPI) 프로그램)
Medicare Part D 저소득 보조금(LIS)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많은 건강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

기억해야 할 사항들:

1. 자녀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받는 공공 혜택은 공적 부조 심사 시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본 규정에 기재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자격을 갖춘 가족 구성원이 받은 혜택은 간주되지 않습니다.

참조:

(1)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final-rul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2. 일부 이민자 그룹은 "공적 부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난민, 망명자, 많은 가정 폭력 생존자들, 기타 보호 그룹과 같이 특정 이민자들은 "공적 부조"로 인한 불인정 결정의 대상이 아니며, 최종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적 이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 가정 폭력 또는 기타 심각한 범죄의 생존자(T 또는 U 비자 신청자/소유자), VAWA 자가청원자, 특별 이민 신분 청소년, 기타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처럼 특정한 이유로 미국에 가석방된 자. 합법적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미국 시민권 신청 시 공적 부조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비예외적 신분으로 영주권 신분을 지원하는 경우, 예외적 신분으로 받은 어떠한 혜택도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민국 관리는 이민자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공적 부조 법령은 이민국 직원이 이민자의 나이, 건강, 소득, 자산, 자원, 교육/기술, 부양 가족, 이민자를 지원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비시민권자의 능력과 관련한 모든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 관리들은 보증인이 비시민을 지원하기로 한 재정보증서(계약서)에 서명했는지도 고려합니다. 심사는 개인의 장래에 관해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때문에 한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란 없습니다. 무직처럼 부정적인 요인은 새 직업을 위해 훈련을 마쳤거나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교육을 받은 자녀가 있는 것 같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혜택을 사용하는 것이 자동으로 공적 부조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며, 신청자는 자신에게 최선의 케이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조:

(1)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final-rul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